관계부처합동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1. 18.(수)

식약처,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 적용 확대

- 「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」 개정안 행정예고
- 농산물 11개 품목, 카벤다짐 등 농약 21종의 출하 전 일자별 잔류허용기준 신설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**생산단계 농산물**의 **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**을 **신설**하고, **농산물 11개 품목**의 **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**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**「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」 개정안**을 11월 18일 **행정예고** 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**농산물 생산단계**에서 **농약 잔류량**을 **사전에 관리**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**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을 명확히** 하고, **농산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**을 **정비**하기 위해 마련했다.

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**농산물별 농약의 감소특성**을 반영해 **출하 전 10일부터 출하일까지 날짜별로 설정한 기준**으로,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.

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먼저, **농산물의 출하 전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**을 **신설**해 기준 적용 방법을 명확히 했다.

이에 따라 **출하 전 검사에서 일자별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**하더라도 출하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**출하일 기준을 우선 적용**하도록 했다. 또한 **해당 농산물의 세부품목별 기준이 없는 경우**에는 같은 품목에 설정된 **다른 세부 품목의 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***하도록 했다.

* (예시) 홍고추의 '아세타미프리드'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풋고추와 꽈리고추의 '아세타미프리드' 기준 중 최저 기준인 풋고추의 기준을 적용

아울러 **양배추, 케일 등 11개 농산물 품목***에 대해 **카벤다짐 등 21종 농약의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신설**했다. 이는 생산단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.

* 갓, 갯개미자리, 갯기름나물, 당귀잎, 머위, 무잎, 시금치, 양배추, 유채, 치커리잎, 케일

이와 함께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('25.8.26.)을 반영해 **양배추 등 6개 농산물 품목***의 **농약 9종**에 대한 **일자별 잔류허용기준**을 **개정**한다.

* 겨자채, 무잎, 무잎(열무), 양배추, 얼갈이배추, 파(대파)

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**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**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'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> 법령·자료 > 입법/행정예고'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	책임자	과장	정형욱 (043-719-3851)
		담당자	연구관	안현주 (043-719-3854)
	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	책임자	과장	김현경 (043-719-4201)
		담당자	연구관	권찬혁 (043-719-420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